

#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호
----------	------

제출연월일 2005. 8. 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포상에 따른 공적심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공적심의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의회 설치(안 제7조의 2)

- 위원수 : 10인이내(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본청의 국장, 직속기관의 소장,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간 사 : 총무과장

나. 표창장에 관한 심사를 종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 것을 공적심의회 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함.(안 제9조)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6. 9 ~ 2005. 6. 29)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포상 조례

제2조중 “사천시외의”를 “다른 지역의”로 한다.

제3조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적심의위원회) ①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

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추천은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③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u>사천시외의</u>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p> <p>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u>시장</u>이 행한다.</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신</u>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li> <li>3. (생략)</li> </ol> <p>&lt;신 설&gt;</p>	<p>제2조(-----) ----- ----- ----- ----- -----<u>다른지역의</u>----- -----.</p> <p>제3조(-----) -----<u>사천시장</u>-----.</p> <p>제5조(-----)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7조의2(공적심의위원회) ①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사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p> <p>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p>

현행	개정안
<p>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출장소 포함)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천시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p>	<p>「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한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③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定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11조 (공적심의회)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공적심의회) ①대통령·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의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원·부·처의 1급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공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공적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 (각 기관 공적심의회) ①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